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33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22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, 정차범위 내 설치 제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,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- 가. 동 제정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나.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2항)
- 다. 정차범위 내에 설치제한 시설물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정차범위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수정한다.

1. “시내버스정류소”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3. “노선”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
4. “정차범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 - 가.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
 - 나.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수정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신설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
2.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
3.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
4. 한전박스
5. 가로변 상점
6.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제8조제2항을 수정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표지판

나. 노선도

다. 승강장

라. 의자

마. 승차대

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
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.

수정안 조문 2단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1. “<u>시내버스정류소</u>”란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</u>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</p>	<p>1. “<u>시내버스정류소</u>”란 <u>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</u></p>
<p>2. “<u>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</u>”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</p> <p>가. 표지판</p> <p>나. 노선도</p> <p>다. 승강장</p> <p>라. 의자</p> <p>마. 승차대</p> <p>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</p> <p>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</p>	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3. “<u>노선</u>”이란 <u>자동차를</u>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</p>	<p>3. “<u>노선</u>”이란 <u>시내버스를</u>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</p>
<p>4. “<u>정차범위</u>”란 <u>표지판 및 승차대 후방 10미터, 도로경계석으로부터 0.5미터</u>를 말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를 말한다.</p>	<p>4. “<u>정차범위</u>”란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<u>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</u></p> <p>나. <u>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</u></p>
<p>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</p> <p>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</p>	<p>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</p> <p>① (제정안과 같음)</p>

수하여야 한다.

1.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,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.
2.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.
3. 정류소 등의 설치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.
4.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
5.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,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차범위 내 승하차 및 접근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.
2. 차도에 인접한 정차범위 내에 교통관련 시설 외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.
3. 필요 시설물들은 정차범위의 시·중점 부분에 통합하여 배치한다.
4. 정류소 등의 부근 가로수는 시각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식재를 금지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
2.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
3.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
4. 한전박스
5. 가로변 상점
6.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
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.

제8조(유지관리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9조(개선사업 등)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제8조(유지관리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표지판

나. 노선도

다. 승강장

라. 의자

마. 승차대

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
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(개선사업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

관한 경과조치)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시내버스정류소”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2. “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”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표지판
 - 나. 노선도
 - 다. 승강장
 - 라. 의자
 - 마. 승차대
 - 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 - 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3. “노선”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.
4. “정차범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

- 가.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
- 나.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(이하 “정류소 등”이라 한다)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정류소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(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,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.
2.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.

3. 정류소 등의 설치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.
 4.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.
 5.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,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
 2.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
 3.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
 4. 한전박스
 5. 가로변 상점
 6.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
-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.

제7조(현황조사 및 정비)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

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.

제8조(유지관리)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,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.

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가. 표지판

나. 노선도

다. 승강장

라. 의자

마. 승차대

바. 버스정보안내단말기

사.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

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(개선사업 등)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

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, 자치구,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)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.